

연천군 군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〔 1999. 1. 18 〕 조례 제2435호

일부개정 2016. 12. 21 조례 제3373호
(제명개정)

일부개정 2023. 7. 13 조례 제3873호
(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
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에 따라 군청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. 7. 13>

제2조(소재지) 군청사무소의 소재는 별표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6. 12. 21 조례 제3373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3. 7. 13 조례 제3873호,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
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연천군 군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

[별표] 〈개정 2016. 12. 21〉

군 청 사 무 소 소 재 지

기 관 명	소 재 지
연 천 군 청	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20